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7. 22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경제지원과장)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5. 7. 17.)

2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업자 차별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업자 차별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 정비(제명, 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
 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5조
 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4조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 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」
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5. 1. ~ 5. 21.) 결과: 의견 없음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조례는 달서구와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, 조례에서 규정한 “우선”이라는 표현이 지역의 다른 사업자의 참여 배제로 지역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용어를 “촉진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5조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개선 의견으로 조례 내용 중 “우선”을 삭제하고,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고(2025. 1. 20.)함에 따라 사업자 차별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촉진, 영업활동 자율성 제고 등으로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,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